

신탁재산 관리상황 보고서

순번	공개대상자				위탁자					비고
	성명	소속	직위	직급 등	성명 (관계)	주식명	신탁 일자	수탁 가액 (천 원)	변동 가액 (천 원)	

「공직자윤리법」 제14조의8제1항 및 「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
규칙」 제19조의3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당사와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공직자의 신탁재산
관리 상황을 보고합니다.

년 월 일

수탁기관의 장

직인

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귀중

작성방법

1. ‘소속’, ‘직위’ 및 ‘직급 등’란은 최초 신탁계약 체결 시 기관명, 직위 및 직급 등을 적으십시오. 다만,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전보 등 신분상의 변동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변동된 소속기관명, 직위 및 직급 등을 적으십시오.
2. 공개대상자와 위탁자가 다를 경우 위탁자 항목의 성명 아래에 괄호로 공개대상자와의 관계를 적으십시오.[예:(배우자)]
3. 수탁가액은 최초 신탁계약 체결 시의 금액을 적으십시오.
4. 변동가액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평가된 신탁재산액을 적고, 신탁재산운용보고서 등 세부내용은 별도 첨부하십시오.
5.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4조의10제3항 후단에 따라 1월 중에 계약이 해지된 신탁재산 관리상황을 전년도의 신탁재산 관리사항에 포함하여 보고할 경우에는 변동가액은 해지 시의 금액을 적고, ‘비고’란에 계약해지사유를 적으십시오.